

의안번호	2210242
의 퇴 인	신영대 의원
회 답 일	2025. 5. 14.
추계번호	25F26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26.4억원, 2035년 20.4억원 등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총 220.0억원(연평균 2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자영어민 등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26.4	-24.4	-23.4	-22.4	-21.4	-20.4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4	-20.4	-20.4	-20.4	-220.0	-22.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9조제2항)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5.12.31. ○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9조제3항)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5.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취득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 감소추세(연평균 -8.5%)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하며, 다만, 현행 수준(2023년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2031년 이후에는 2031년 감면액(1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액(8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액(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취득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액(0.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소형어선 지방세 감면(안 제9조제2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31억원, 2023년 22억원으로 감소추세(연평균 -8.5%)
- 재산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7억원, 2023년 8억원으로 연평균 8억원으로 나타남
-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1억원, 2023년 1억원으로 연평균 1억원으로 나타남

[표 2] 최근 5년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율/ 연평균액
취득세	31	30	27	27	22	-8.5%
재산세	7	8	8	8	8	8
지역자원시설세	1	1	1	1	1	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향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억원, 2035년 20억원 등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총 215억원(연평균 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취득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감소추세(연평균 -8.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다만, 현행 수준(2023년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2031년 이후에는 2031년 감면액(1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8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3] 향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취득세 감소액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17	15	14	13	12	1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11	11	11	11	125	13
재산세 감소액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8	8	8	8	8	8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8	8	8	8	80	8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1	1	1	1	1	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1	1	1	1	10	1
합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6	24	23	22	21	2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	20	20	20	215	22

나.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안 제9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5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에 대한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은 2021년 0.2억원, 2023년 0.2억원으로 연평균 0.3억원으로 나타남

○ 등록면허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0.1억원, 2023년 0.1억원으로 연평균 0.1억원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어업권·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액
취득세	0	0	0.2	0.6	0.2	0.3
등록면허세	0.1	0.1	0.1	0.1	0.1	0.1

주: 취득세 연평균액은 2019년 및 2020년 취득세 감면실적이 없는 관계로 최근 3년간(2021~2023년)의 연평균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향후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0.4억원, 2035년 0.4억원 등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총 4.0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취득세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0.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5] 향후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취득세 감소액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0.3	0.3	0.3	0.3	0.3	1.5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0.3	0.3	0.3	0.3	3	0.3
등록면허세 감소액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0.1	0.1	0.1	0.1	0.1	0.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0.1	0.1	0.1	0.1	1	0.1
합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0.4	0.4	0.4	0.4	0.4	0.4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0.4	0.4	0.4	0.4	4.0	0.4

다. 추계결과

- 향후 자영업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4억원, 2035년 20.4억원 등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총 220.0억원(연평균 2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자영업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지방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9조제2항)	-26.0	-24.0	-23.0	-22.0	-21.0	-20.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0	-20.0	-20.0	-20.0	-215.0	-22.0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지 방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9조제3항)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0.4	-0.4	-0.4	-0.4	-0.4	-0.4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0.4	-0.4	-0.4	-0.4	-4.0	-0.4
합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6.4	-24.4	-23.4	-22.4	-21.4	-20.4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4	-20.4	-20.4	-20.4	-220.0	-22.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